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1.

발 의 자 : 이기현 · 조계원 · 박해철
김 윤 · 김주영 · 이재관
김상욱 · 복기왕 · 박지원
위성곤 · 김문수 · 손 솔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,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,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.

그런데 최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·모욕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을 차별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,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정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등 ‘현수막 공해’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

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지역차별적 표현 및 허위의 사실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·모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

것임(안 제5조제2항제5호, 제5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5호 중 “인종차별적”을 “인종·지역차별적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

5의3.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금지광고물등) ① (생 략)	제5조(금지광고물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용을 표시(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)하 여서는 아니 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인종차별적</u>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	5. <u>인종 · 지역차별적</u> -----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5의2. <u>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</u>
<u><신 설></u>	5의3. <u>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</u>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